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29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환경보전과장 정홍준)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및 의무구매의 이행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힘쓰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시 소속 행정기관, 부천시의회 사무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 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8조까지)
- 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의 범위 및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친환경상품의 개발·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 및 생산·소비촉진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의 사무처리구분을 명확히 정함.(안 제18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조례가 제정되면 친환경 상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 할 계획은?	○우선 물품을 구매 할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여 사용토록조치하고, 기업체 및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친환경 상품을 구매토록 유도 해 나갈 계획임.
○친환경 상품의 종류 및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	○친환경 상품 구분방법은 환경부에서 제정한 Q마크 부착되어 있으며 문구류, 가구, 가스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등 많은 상품들이 있음.
○친환경 상품을 일반시민들이 구입 할 때 비용이 비싸면 시민들이 구매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지?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상품의 가격을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으며, 상품의 판매 가격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제145호
의결 년월일	2007. 9.14 (제138회)

제출년월일 : 2007. 8. 29.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및 의무구매의 이행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힘쓰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시 소속 행정기관, 부천시의회 사무국 등으로 정함.(안 제4조)
- 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에 대한 심의·자문은 부천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8조까지)
- 라.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의 범위 및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의 판단기준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각 기관별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바. 친환경상품의 개발·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한 자금 융자지원,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기관 평가 및 생산·소비촉진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의 사무처리구분을 명확히 정함.(안 제18조)

부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

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2. 부천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에서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대한 심의·자문은 부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5. 시 관내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장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1항에 따라 시 관내의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시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③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부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실적을 집계 시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민간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 ①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과 건설공사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5호의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경우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장에게 강사 및 교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제12조(자금융자 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조사·수집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친환경상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6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 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구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의 사무처리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업무별 부서 간의 사무처리구분(조례 제18조 관련)

1. 환경부서: 친환경상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나. 시 회계부서·건설부서·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다.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1)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정책 마련 및 시행
- 2)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3)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4)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라.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본청·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본청·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다.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 2)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3)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상품을 사용하도록 계약

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가.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1)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 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나.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1)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2) 지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 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4. 시의회 사무국, 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가.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나. 친환경상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다.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1)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2) 각종 물품구매,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상품을 사용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